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시설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중산고등학교
내 용

1.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미징수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알림(시설과-14334, 2008.12.15.)」에 따르면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학교시설사업 시행 시 시공업체가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측정하되, 소규모 공사 및 별도의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전월 또는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하여 공사금액 대비 0.11% ~ 0.14%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을 도급자에게 징수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산고등학교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공공요금 총 95,000원을 미징수하여 공공요금 징수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시설공사 공공요금 미징수 현황

[단위 : 원]

회계연도	구분	건명	계약체결 현황			비고
			업체명	공사금액	공공요금 미징수액 (0.11%)	
2020	공사	중산고 교실바닥교체공사	주식회사 ○○○○○	86,367,900	95,000	원단위 절사

2. 하자담보책임 기간 설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검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중산고등학교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시설공사 2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초일 적용시점을 계약상대자가 목적물을 인수한 날이나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아닌 준공검사일 다음날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적정하게 정한 사실이 있다.

[표2]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내역

연번	건명	준공일	준공검사일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고
				실제 기간	정당 기간	
1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2021.02.08.	2021.02.08.	2021.02.09. ~2023.02.08.	2021.02.08. ~2023.02.07.	각서
2	교실바닥교체공사	2021.02.26.	2021.02.26.	2021.02.27. ~2022.02.26.	2021.02.26. ~2022.02.25.	증권

【조치할 사항】

- ① 중산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하며, 미징수한 공공요금 95,00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중산고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회의소집 등), 제14조(회의 공개원칙),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중산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총 4회(2020학년도 제7회, 2021년 제2회, 제3회, 제9회) 동안 회의 개최를 7일 전에 안내하지 않았으며,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과 학교장의 서명을 누락하였고,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하지 않았다. 그리고 홈페이지 등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건이 1건(2021학년도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 공개하지 않은 건이 6건(2020학년도 제5회, 제6회, 제9회, 2021학년도 제2회, 제4회, 제5회)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중산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